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6년 1월 21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(주)무궁화신탁
(영문명) MUGUNGHWA TRUST CO., LTD.
(홈페이지) <http://www.mgtrust.co.kr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, 19층(대치동, 글라스타워빌딩)
(전 화) 02-3456-0000

대 표 이 사 : 이 용 만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본 부 장
(성 명) 장 석 희 (전 화)02-3456-0003

작 성 자 : (직 책) 차 장
(성 명) 윤 성 민 (전 화)02-3456-0085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8호)

소송 등의 제기·신청

1. 사건의 명칭	-소유권이전등기 등
2. 원고·신청인	-윤인섭 외 244명
3. 청구내용	-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함에 있어 분양전환가격에 관하여 위탁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하여 합리적인 가격범위내에서 분양전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음
4. 관할법원	-서울중앙지방법원
5. 향후대책	-위탁자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함
6. 제기·신청일자(접수일)	-2016.01.05.
7. 확인일자	-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당사는 분쟁 대상인 물건 전부를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신탁재산 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한바, 고유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